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아동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아동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19454호, 2023. 6.13. 공포, 2023.12.14. 시행)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(안 제26조의11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11(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)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정부조직법」 제2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, 법무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
2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
3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26조의11(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) 법 제29조의8제1항에 따른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「정부조직법」 제2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, 법무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2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3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4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	
연락처	(044) 202 - 3381